

2025년도 제2차 재무경영위원회 회의결과

I 개요

① 일 시: 2025. 2. 25.(화)~27.(목)

② 심의방법: 서면심의

③ 참여현황: 재적위원 20명 중 참여 19명, 불참 1명

■ 참석위원(19명)

- 위원장 유우식, 위원 최병조, 위원 박용호, 위원 박문주, 위원 김석철, 위원 한민섭, 위원 김동원, 위원 노지승, 위원 이윤정, 위원 김동진, 위원 서정현, 위원 최수봉, 위원 이충우, 위원 김동배, 위원 천성철, 위원 임영태, 위원 한재길, 위원 조병관, 위원 이헌구

■ 불참위원(1명)

- 위원 송인석

④ 회의결과(요약)

심의안건	안 건 명	심의결과
제2025-08호	인천대학교 교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원안가결
제2025-09호	인천대학교 조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원안가결
제2025-10호	인천대학교 통합데이터센터 서비스 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원안가결

1 제8호 심의안건: 인천대학교 교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 안건요지 [제출자: 교무처장]

○ 제안사유

가. 「공무원보수규정」 개정(2025. 1. 3.자)에 따른 봉급 및 근속가봉 인상분 반영

- 제30조의2 근속가봉 8만원(변경전 7만7700원)
- [별표12] 국립대학 교원의 봉급표(전년대비 3% 인상)

나. 국가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자녀 가족수당 인상 적용 반영

○ 주요내용

가. [별표1]의 교원 봉급표 개정

- 교원 호봉별 봉급표 인상액(3%) 및 근속가봉 인상액 반영

나. 제7조(가족수당) 개정

- 자녀 가족수당 인상

·첫째 자녀 월 3만원 → 월 5만원(2만원 인상)

·둘째 자녀 월 7만원 → 월 8만원(1만원 인상)

·셋째 이후 자녀 월 11만원 → 월 12만원(1만원 인상)

다. 적용시기: 2025. 1. 1.

■ 심의결과: 원안가결

② 제9호 심의안건: 인천대학교 조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 안건요지 [제출자: 교무처장]

○ 제안사유

가. 조교 노조 「임금협약」에 의거 전년대비 공무원 봉급인상률(3%인상) 적용 반영

나. 국가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자녀 가족수당 인상 적용 반영

○ 주요내용

가. [별표1]의 조교 봉급표 개정

- 조교 호봉별 봉급표 인상액(3%) 반영

나. 제10조(가족수당) 개정

- 자녀 가족수당 인상

·첫째 자녀 월 3만원 → 월 5만원(2만원 인상)

·둘째 자녀 월 7만원 → 월 8만원(1만원 인상)

·셋째 이후 자녀 월 11만원 → 월 12만원(1만원 인상)

다. 적용시기: 2025. 1. 1.

■ 심의결과: 원안가결

③ 제10호 심의안건: 인천대학교 통합데이터센터 서비스 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 안건요지 [제출자: 정보전산원장]

○ 제안사유

가. 인천대학교 통합데이터센터 서비스 이용 요금과 관련하여 대학의 정책적 필요성 등의 사유로 인해 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요금납부를 조정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안 제5조(요금 및 납부기준) 제①항 : 대학의 정책적 필요성 등의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정보전산원 운영위원회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요금납부를 조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심의결과: 원안가결